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30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6보고100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윤오연(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박재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중석(국선)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6. 3. 13. 16:53경 대구 달서구 'B건물앞' 버스정류장에서 C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16세)가 앉아있던 자리 옆에 앉아서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6:55경 위 버스가 대구 달서구 E, F네거리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 다리에 자기 다리를 밀착시키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손을 피해자 허벅지 위에 올렸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28,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4, 6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명령의 부과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로 가서 다리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16세의 미성년자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당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의미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것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장의 처벌보다는 치료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도정원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29

판사 우정우 _____

판사 강화현 _____



별지

특 별 준 수 사 항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먼저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또는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고 그 경과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3.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 등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